

농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어기구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8408
----------	-------

발의연월일 : 2026. 4. 17.

발 의 자 : 어기구 · 윤준병 · 주철현  
이연희 · 복기왕 · 황명선  
소병훈 · 이재관 · 박희승  
조인철 · 박용갑 의원  
(11인)

제안이유

현행 「폐기물관리법」은 하루 300kg 이상 배출하는 왕겨, 쌀겨, 벃짚, 옥수수대 등의 농산부산물을 사업장 폐기물로 구분하여 처리하도록 하고,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에 따라 순환자원으로서 인정받은 경우에만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농가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이 과정에서 불법적으로 농산부산물을 처리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음.

특히, 대표적인 농산부산물인 왕겨와 쌀겨는 지난해 겨우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아 재활용이 쉬워졌으나 파프리카와 토마토의 줄기를 비롯한 나머지 농산부산물은 여전히 폐기물로 분류돼 있고, 농산부산물을 관리하는 주체가 없어 재활용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한편, 농산부산물은 유기성 자원으로 사료나 비료를 만드는 데 사용될 수 있고 에너지화하여 연료로 활용하기도 하므로 다른 폐기물과는

다른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고, 최근 「수산물 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농산부산물에 대하여도 재활용에 관한 법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이에 농산부산물을 친환경적이며 위생적으로 처리하고 그 재활용을 촉진함으로써 농산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농산부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농산부산물을 친환경적이며 위생적으로 처리하고 그 재활용을 촉진하여 농산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부산물을 친환경적이고 위생적으로 처리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농산부산물 재활용 기본계획을 수립하되,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10조에 따른 순환경제기본계획에 기본계획의 내용이 포함되는 경우 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봄(안 제5조).

다. 농산물을 재배·수확·가공·판매하는 자 중에서 농산부산물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농산부산물의 분리 배출 의무를 부과함(안 제7조).

라. 농산부산물 처리업(농산부산물 수집·운반업, 농산부산물 중간처리업)을 하려는 자는 농산부산물의 처리에 필요한 시설·장비 및 인력 등을 갖추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함(안 제9조).

마.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시·도지사도 하여금 농산부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농산부산물 자원화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자원화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시·도지사에게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 농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산부산물을 친환경적이며 위생적으로 처리하고 그 재활용을 촉진하여 농산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산물”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 중 농작물재배업 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농산부산물”이란 농산물의 재배·수확·가공·판매 등의 과정에서 기본 생산물 외에 부수적으로 발생한 줄기, 가지, 껍질 등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농산부산물 재활용”이란 농산부산물을 식품, 비료, 사료, 연료 등 완성품의 원료 등으로 제조·가공하는 것을 말한다.
4. “농산부산물 수집·운반업”이란 농산부산물을 수집하여 농산부산물 자원화시설 또는 중간처리업자에게 운반하는 영업을 말한다.
5. “농산부산물 중간처리업”이란 농산부산물을 세척, 분리, 선별, 파쇄하거나 재활용제품으로 제조·가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6. “농산부산물 처리업”이란 농산부산물의 수집·운반업 또는 농산

부산물의 중간처리업을 말한다.

7. “농산부산물 자원화시설”이란 농산부산물의 재활용과 자원화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특별시장·통합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설치·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① 농산부산물의 친환경적·위생적인 처리와 재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은 이 법을 우선하여 적용하고,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률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농산부산물이 다른 폐기물과 혼합된 경우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폐기물관리법」의 해당 조항만을 적용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농산부산물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잔재물(「폐기물관리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소각 또는 매립 대상 폐기물로 한정한다)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의 폐기물로 보아 「폐기물관리법」의 해당 조항만을 적용한다.

④ 이 법의 적용대상 농산부산물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재활용 유형에 관한 세부분류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의2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산부산물을 친환경적·위생적으로 처리하고 재활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농산부산물 재활용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농산부산물을 친환경적이고 위생적으로 처리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농산부산물 재활용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산부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농산부산물의 친환경적·위생적인 처리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3. 농산부산물 자원화시설의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농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10조에 따른 순환경제기본계획에 제2항의 내용이 포함되는 경우 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④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연차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농산부산물 재활용 통계조사)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조사결과를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연간 농산부산물 발생량

2. 연간 농산부산물의 처리실적

3.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제출 받은 시·도지사는 이를 종합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조사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조사, 제출, 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농산부산물 분리배출 의무 등) ① 농산물을 재배·수확·가공·판매하는 자 중에서 농산부산물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농산부산물분리배출의무자”라 한다)는 농산부산물을 다른 폐기물과 분리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② 농산부산물의 분리배출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기준을 지키지 아니하는 농산부산물 분리배출의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명령 등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8조(농산부산물 분리 배출 시설 지원) ① 시·도지사는 농산부산물

의 분리배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산부산물분리배출의무자에게 농산부산물을 분리배출하기 위한 시설구축 및 인력고용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농산부산물 분리배출의 지원대상, 지원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농산부산물 처리업의 허가) ① 농산부산물 수집·운반업, 농산부산물 중간처리업 등 농산부산물 처리업을 하려는 자는 농산부산물의 처리에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장비 및 인력 등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농산부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농산부산물처리업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다른 자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농산부산물을 수집·운반 또는 중간처리하게 하지 아니할 것

2. 허가증을 빌려주지 아니할 것

③ 농산부산물처리업자가 허가받은 사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허가·변경허가·변경신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권리·의무의 승계) ① 농산부산물처리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을 때에는 그 양수인

· 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은 종전의 농산부산물처리업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시설·장비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종전의 농산부산물처리업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
3.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 재산의 매각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절차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종전의 농산부산물처리업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농산부산물처리업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상속인은 제1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에 그 처리업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제11조(농산부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 ① 농산부산물처리업자는 다음 각 호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농산부산물과 다른 폐기물의 분리에 관한 사항
2. 농산부산물 처리 시설 및 장비에 관한 사항

3. 농산부산물 처리 시 환경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효율적인 농산부산물 처리와 공중위생상 위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도지사는 제1항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처리 방법의 변경 또는 그 밖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2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산부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1.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 또는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이 법 또는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농산부산물 처리업의 허가가 취소된 자(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농산부산물 처리업의 허가가 취소된 자는 제외한다)로서 그 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제13조(허가의 취소 등) ① 시·도지사는 농산부산물처리업자(제10조에 따라 농산부산물처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도 포함한다)가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 제12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같은 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6개월 이내에 다른 사람에게 그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와 같은 조 제6호에 해당하게 된 법인이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영업정지기간 중 영업을 한 경우
  4. 제9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후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경우
  5. 제9조제1항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6. 제9조를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한 경우
  7. 제9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8. 제11조제2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적인 행정처분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시·도지사는 제1항의 허가취소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4조(농산부산물처리업자에 대한 과징금 처분) ① 시·도지사는 제 13조에 따라 농산부산물처리업자에게 영업의 정지를 명령할 경우로서 그 영업의 정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영업의 정지를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농산부산물의 적체(積滯) 등으로 농산부산물 위탁처리자의 사업 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2. 해당 농산부산물처리업자가 보관 중인 농산부산물로 인하여 인근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되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营业을 계속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별 과징금의 금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면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고, 농산부산물 재활용 지원 및 촉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되어야 한다.

제15조(휴업과 폐업 등의 신고) ① 농산부산물처리업자는 그營業을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 중인 농산부산물에 적절한 처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농산부산물 자원화시설의 설치·운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농산부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농산부산물 자원화시설(이하 “자원화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시·도지사가 자원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농산부산물 재활용 통계조사를 바탕으로 농산부산물 발생량 및 처리실적 등의 수요에 맞게 시설·장비 등을 갖추어 설치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시·도지사가 자원화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자원화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시·도지사에게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자원화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자원화시설의 기능 등) 자원화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농산부산물 재활용을 위한 가공·처리·보관

2. 농산부산물물의 자원화
3. 농산부산물 재활용제품의 보관·판매
4. 농산부산물 재활용기술 연구·개발
5. 농산부산물 재활용 교육·홍보 및 정보제공
6. 그 밖에 농산부산물 재활용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8조(재활용제품 판로확대)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시·도지사는 자원화시설과 농산부산물처리업자가 생산하는 식품, 비료, 사료, 연료 등의 재활용제품 판로확대를 위한 지원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활용제품 판로확대의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시·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산부산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2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산부산물 처리업의 영업행위를 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산부산물 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

②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농산부산물을 수집·운반 또는 중간처리하게 하거나 허가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1조(과태료) ①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농산부산물을 다른 폐기물과 분리하지 아니하고 배출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7조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9조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허가사항을 변경한 자

3.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권리·의무승계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11조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 제1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휴업 또는 폐업을 한 자

6. 제15조제2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산부산물처리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는 제9조의 규정에 따른 농산부산물처리업자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이 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폐기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농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산부산물이 다른 폐기물과 혼합된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고, 다른 폐기물과 혼합되지 않아 농산부산물만 배출·수집·운반·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